

법무부

즉시보도용
2006년 2월 20일

온타리오 정부의 혁신적인 인권제도
혁신안은 대중을 보다 잘 봉사하기 위한 방안

TORONTO —대중에 종전보다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제도가 McGuinty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법무부 장관 Michael Bryan 가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온타리오의 인권제도를 혁신함으로써 대중에게 과거 어느 때 보다 좋은 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평 절차를 개선하여 개개인은 물론 집단의 복잡한 인권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타리오의 인권의 홍보, 증진, 시행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Bryant 가 언급했습니다.

“현존하는 인권제도는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와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962년 캐나다에서 최초인 온타리오 인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며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약간의 대중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불평을 접수, 해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재판소는 위원회가 회부하는 사건을 청문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의회에 상정될 새로운 입법 모델에 의하면 위원회는 주로 대중교육, 연구 관찰을 통하여 조직적 차별을 공론화 하여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어 온타리오 내의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방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원회 내에 인종 차별을 막기위한 연구와 정책을 위원장에게 건의 조언을 하는 반인종차별 서기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인권재판소에 불평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에 개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시에 재판소는 각개인이나 단체가 재판소에 직접제소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현대적이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분쟁 조정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상당히 성공적이긴 하였으나 위원회는 불평의 해결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직장, 숙박,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온타리오가 세계적인 인권지도자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와 협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온타리오 인권위원장인 **Barbara Hall** 이 언급하였습니다.

“인권은 기본권입니다. 온타리오 주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분쟁 해결을 할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고 법의 주요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법과 절차를 설계 하는 데에 일조를 한 것에 대하여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온타리오 인권재판소장인 **Michael Gottheil** 은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인권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보다 융통성 있고 인권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인권제도가 있으므로 온타리오 주민들이 존엄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타리오가 세계의 인권증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주민 모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온타리오 세입자 변호 센터 소장인 **Kathy Laird** 가 언급했습니다.

- 30 -

연락처
Greg Crone
 장관실
 (416) 326-1785

Brendan Crawley
 공보관
 (416) 326-2210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일반 전화 문의 16-326-2220 또는 1-800-518-7901

시력장애자는 상기 전화번호로 본 문서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TTY: 416-326-4012

본 문서는 14 개 국어로 번역 됩니다. 번역된 문서는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